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를 위하여『민법』에 위반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시설사용료 지역민 감면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휴관일 신설(안 제5조)
나. 체육시설 사용료 정비(안 제10조, 별표 1)
다. 관람권 징수금액에 대한 현실화(안 제11조)
라. 체육시설 이용사용자에 대한 초과사용료 삭제(안 제12조)
마.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변경(안 제13조, 별표 2)
바. 시설 사용 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조항 추가 및 『민법』에 위반 소지 규정 삭제(안 제16조)
사. 관람권 잔표 와 회수된 관람권 폐기절차 규정(안 제23조)
아. 프로그램 운영 신설(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감사실-5902(2018. 8. 8.)〕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44052(2018. 8. 8.)〕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예고기간 : 2018. 8.30. ~ 9.19.)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체육시설이라”를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은 시설을 휴관한다.

제10조제1항 중 “상업사용”을 “부속시설, 광고물 또는 상행위”로, “[별표 1], [별표 2]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전용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려면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람료를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용사용료에 추가하여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계 공무원의 입회아래 정산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전용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 대상 및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제16조제2항 중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진다”를 “질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받아야”를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후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된 관람권은 관계공무원 입회 아래 폐기하여야”로 한다.

제25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프로그램의 운영)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기 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성주체육관		주 간	40,000	60,000	100,000	140,000	※ 오전, 오후로 구분 시 주간금액의 1/2적용
		야 간	30,000	45,000	70,000	100,000	
성주별고을체육관(실내체육관)		주 간	70,000	120,000	200,000	250,000	
		야 간	100,000	150,000	250,000	300,000	
성주별고을체육관(씨름장)		주 간	10,000	20,000	50,000	70,000	※ 타 시·군 전지훈련장으로 이용 시 금100,000원/1일 적용
		야 간	20,000	30,000	70,000	100,000	
성주별고을운동장	트 랙	오 전	20,000	30,000	40,000	60,000	
		오 후	30,000	40,000	60,000	80,000	
	필 드	오 전	45,000	70,000	90,000	140,000	
		오 후	55,000	80,000	110,000	160,000	
성주생활체육공원(테니스, 정구, 족구)		주 간	15,000	30,000	20,000	35,000	2시간/1면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 가산
선남 강변야구장		-	50,000	100,000	100,000	200,000	2시간/1회
○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로 하며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단 주간·야간으로 구분할 경우 주간은 08:00~17:00까지로 한다.							

2. 이용료 : 면제

3. 중계방송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텔 레 비 전		라 디 오	
			국 내	국 외	국 내	국 외
중계방송	생방송	체육경기	40,000	60,000	20,000	40,000
		체육경기 이외	80,000	100,000	40,000	60,000
	녹화 또는 녹음	체육경기	20,000	30,000	10,000	20,000
		체육경기 이외	40,000	50,000	20,000	30,000
○ 중계방송사용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한다.						

4.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종 류		단 위	요 금	비 고
성주별고을 체육관	전광판	1회	30,000	4시간/1회
	무대 조명시설	1회	30,000	
음향설비	음향시설	1회	25,000	
	마이크(2대/기본)	1회	5,000	
냉・난방		1회	50,000	
전기시설		1회	30,000	
○ 그 밖의 청소료		주최 측에서 부담 ※고무매트 정리비용 포함		

5.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광고	선전물	㎡/1일	10,000	
	부양광고물 (애드벌룬 등)	1일/1개	7,000	
촬영 (영화, 드라마, 상업광고 등)		주간	40,000	8시간/1일 ※ 초과요금 :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야간	60,000	
○ 사용자 주최 측의 홍보 현수막은 2매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3조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감경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성주군 다자녀가정	100분의 50
	성주군민	100분의 30

○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 관리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리·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성주군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정구장, 족구장, 하키장, 축구장, 궁도장, 야구장,풋살구장, 수영장 등)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 12. (생 략)	제2조(정의) ----------. 1.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 2. ~ 12.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 8. (생 략)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의 개방) ① ~ ⑤ (생 략)	제5조(시설의 개방)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은 시설을 휴관한다.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그 사용료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료) ①---------- ---------- 부속시설, 광고물 또는 상행위 ------ 별표 1과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징수액의 100분의 2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 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의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려면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람료를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료 정산시기 및 서식을 규칙에서 규정토록 함.	②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용사용료에 추가하여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계 공무원의 입회아래 정산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초과	제12조(초과사용료) ①---------- ---------- 전용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
1. 전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삭 제>
2. 이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 대상 및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4.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5.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	②----------

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아니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생 략)	제19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행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 ---------- - 질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생 략)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현행과 같음)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후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된 관람권은 관계공무원 입회 아래 폐기하여야 --.
<신 설>	제25조(프로그램의 운영)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생 략)	제26조 (현행 제25조와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1]

성주군체육관 사용료

(제10조 제1항 관련)

(전용료)

사용목적	기 준	요 금	
		평 일	토·일·공휴일
체육경기	오전 08:00 ~ 12:00(1회)	20,000원	30,000원
	오후 13:00 ~ 17:00(1회)	20,000원	30,000원
	야간 18:00 ~ 22:00(1회)	30,000원	45,000원
체육이외 일반사용	오전 08:00 ~ 12:00(1회)	50,000원	70,000원
	오후 13:00 ~ 17:00(1회)	50,000원	70,000원
	야간 18:00 ~ 22:00(1회)	70,000원	100,000원

(이용료)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개 인	1인 1회(2시간당)	500원	
단 체	1인 1회(2시간당)	350원	

(관람료)

기 준	요 금	비 고
성인 1인 1회	200원	
어린이, 청소년, 군인	100원	

개 정 안

[별표1]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기 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		비고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성주체육관		주 간	40,000	60,000	100,000	140,000	※ 오전 오후로 구분 시 주간금액의 1/2적용
		야 간	30,000	45,000	70,000	100,000	
성주별고을체육관 (실내체육관)		주 간	70,000	120,000	200,000	250,000	
		야 간	100,000	150,000	250,000	300,000	
성주별고을체육관 (씨름장)		주 간	10,000	20,000	50,000	70,000	※타 시·군선수 훈련 장으로 이용 시 금100,000원/1일 적용
		야 간	20,000	30,000	70,000	100,000	
성주 별고을 운동장	트 랙	오 전	20,000	30,000	40,000	60,000	
		오 후	30,000	40,000	60,000	80,000	
	필 드	오 전	45,000	70,000	90,000	140,000	
		오 후	55,000	80,000	110,000	160,000	
성주생활체육공원 (테니스, 정구, 족구)		주 간	15,000	30,000	20,000	35,000	2시간 /1면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 가산
선남 강변야구장		-	50,000	100,000	100,000	200,000	2시간/1회

○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로 하며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단 주간·야간으로 구분할 경우 주간은 08:00~17:00까지로 한다.

2. 이용료 : 면제

3. 중계방송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텔 레 비 전		라 디 오	
			국 내	국 외	국 내	국 외
중계 방송	생방송	체육경기	40,000	60,000	20,000	40,000
		체육경기 이외	80,000	100,000	40,000	60,000
	녹화 또는 녹음	체육경기	20,000	30,000	10,000	20,000
		체육경기 이외	40,000	50,000	20,000	30,000

○ 중계방송사용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한다.

4.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종 류		단 위	요 금	비 고
성주별 고을체 육관	전광판	1회	30,000	4시간/1회
	무대 조명시설	1회	30,000	
음향설비	음향시설	1회	25,000	
	마이크(2대/기본)	1회	5,000	
냉·난방		1회	50,000	
전기시설		1회	30,000	
○ 그 밖의 청소료		주최 측에서 부담		※고무매트 정리비용 포함

5.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광고	선전물	㎡/1일	10,000	
	부양광고물 (애드벌룬 등)	1일/1개	7,000	
촬영 (영화, 드라마, 상업광고 등)		주간	40,000	8시간/1일 ※ 초과요금 :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야간	60,000	
○ 사용자 주최 측의 홍보 현수막은 2매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2]

생활체육시설(테니스, 정구, 족구장) 사용료

구분 경기장별	기준	체육행사		체육 이외의 행사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테니스장	주간 (1면당)	15,000	30,000	20,000	35,000	1면 2시간당
정구장		15,000	30,000	20,000	35,000	
족구장		15,000	30,000	20,000	35,000	

※ 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량의 30% 가산.

축구장 사용료

사 용 목 적	요 금		비 고
	평 일	토.일.공휴일	
체육 경기	100,000	150,000	1 회 사용시간은 4시간 이내
체육 경기 외	200,000	300,000	

야구장 사용료

사 용 목 적	요 금		비 고
	평 일	토.일.공휴일	
체육 경기	50,000	100,000	1 회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
체육 경기 외	100,000	200,000	

성주별고을운동장 사용료

(트랙 및 필드 사용료) (단위 : 원)

사용목적		단 위	사 용 료			비 고
			1 일	오 전	오 후	
체육경기	트랙	평 일	50,000	20,000	30,000	축구 경기는 1회 4시간 적용
		토 · 일/ 공휴일	70,000	30,000	40,000	
	필드	평 일	100,000	45,000	55,000	
		토 · 일/ 공휴일	150,000	70,000	80,000	
체육경기외	트랙	평 일	100,000	40,000	60,000	
		토 · 일/ 공휴일	140,000	60,000	80,000	
	필드	평 일	200,000	90,000	110,000	
		토 · 일/ 공휴일	300,000	140,000	160,000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종 류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음 향 시 설	1회	30,000	1회 사용시간은 4시간 이내
	1일	60,000	
전 기 시 설	1회	30,000	
	1일	60,000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3조 관련)

구분	대 상	감면 요율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감경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성주군 다자녀가정	100분의 50
	성주군민	100분의 30

○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